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3권 행정학개론 257~257p 번호 : 08	해설	[② ×] 국가공무원법은 임용방식과 업무특성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. <u>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(국가공무원법 제2조).</u>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은 <u>별정직 공무원에 해당한다.</u>	[② ×] 국가공무원법은 임용방식과 업무특성에 따라 공무원을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. <u>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이 있다(국가공무원법 제2조).</u>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은 <u>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.</u>
		수정 사유	해설 수정
1권 민법총칙 306~306p	개념,공식-설명	(4)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하거나 일부를 변제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(대판 2001.6.12. 2001다3580)	(4) 시효완성사실을 알았을 것 과거 대법원은 시효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을 한 때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(대판 2001.6.12. 2001다3580), 최근 판례를 변경하여 ' <u>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.</u> '는 법리는 더 이상 타당하지 <u>않다</u> 고 보았다(대판 2025.7.24. 2023다240299[전합]).
		수정 사유	판례 변경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